

● 제285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19. 3. 4.

보건복지위원회

수석전문위원

【김용연 의원 대표발의】

의안번호 344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김용연 의원 대표발의(외 11명)
- 나. 제출일자 : 2019년 1월 28일
- 다. 회부일자 : 2019년 1월 31일

2. 제안이유

- 가.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 여성 살해 사건 이후 남녀 공용화장실은 범죄 사각지대로 제기되어 왔으며,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 확대에 대한 여론이 높은 실정임.
- 나.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(또는 층간분리)를 위한 캠페인·홍보 등 시민참여운동을 전개하였으나, 건물주의 관심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「공중화장실 등에 의한 법률」에 의한 남녀 분리 대상이 아닌 건물 내 화장실 안전 확보가 요구됨.
- 다. 이에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 분리(층간 분리 포함) 시 분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, 남녀 분

리가 어려운 개소에 대해서는 시견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개정을 통해 조례 운영범위를 확대하고자 함(안 제1조)
- 나.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화장실 용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(안 제2조제3항, 제4조제1항, 제4조제6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건축법」,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개정안의 취지

- 민간 화장실 중 남녀분리 등은 법률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 관계로 오래된 건물 등에는 남녀분리가 안 되어 있는 등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, 범죄노출 등을 이유로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 확대에 대한 여론이 높은 실정임.
- 그러나 건물주의 관심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화장실의 남녀분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이 불식되지 않고 있음.
-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 분리 (층간 분리 포함)하는 경우 분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, 남녀 분리가 어려운 개소에 대해서는 시건장치 등 안전 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임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- 서울시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 및 동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자치구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개방 화장실을 확보하고 운영해야 함. 따라서 개정안 제1조에서 대상

범위를 확대하여 민간화장실의 관리 및 운영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음.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<u>개방화장실의 관리·운영 지원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관리·운영 지원을 통해</u> ----- -----

- 또한 개정안 제2조제3항(아래 표 참조)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, 개방화장실, 이동화장실, 간이화장실,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의미한다고 하여 민간화장실을 정의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음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(생략) 1.~ 2. (생략) <u>〈신 설〉</u>	제2조(용어의 정의) (현행과 같음) 1.~2. (현행과 같음) 3. “민간화장실”이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의한 공중화장실, 개방화장실, 이동화장실, 간이화장실,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.

- 또한 제4조1항을 개정하여 기존 개방화장실에 지원하던 관리운영비를 관리운영비 및 개·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대상도 개방화장실 외에도 민간화장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관리운영비 등의 지원) ① 시장은 <u>개방화장실</u>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<u>관리운영비</u>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관리운영비 등의 지원) ① ---- --- <u>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</u> 지원을 위해 ----- <u>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·보수 사업비</u> 등을 -----</p>

- 마지막으로 시장이 화장실 관리에 있어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·보수 및 건축허가시 남녀 화장실 구분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관리운영비 등의 지원)</p> <p>① ~ ⑤ (생 략)</p> <p>⑥ 시장은 <u>개방화장실</u>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~ 2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3. (생 략)</p> <p>⑦ (생 략)</p>	<p>제4조(관리운영비 등의 지원) ① <u>개 정안 참조.</u>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<u>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1.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·보수 사업</u></p> <p>4. <u>건축허가 시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를 위한 자치구 및 관계 기관 협력사업</u></p> <p>5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

나. 개정안의 필요성

- 2018년 11월 22일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시행¹⁾되어 남녀구분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물의 바닥면적이 합 3천㎡에서 합 2천㎡로 축소되고, 의료·문화·집회 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합 2천㎡에서 합 1천㎡ 로 개정되었음.
- 행정안전부는 2019년 ‘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’

1) 개정 2017년 11월 21일

에 국비 22억6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된바 있으며,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각각 2개씩 지원이 가능한 상황임. 따라서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본 개정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.

- 또한 화장실 분리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 이외에도 공중위생 등의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시급성이 있다 할 것임.

3 종합의견

-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져 있고, 이에 대하여 여성이나 범죄에 취약한 아동 등에 대한 안전의 차원에서 남녀 화장실 분리를 촉진할 수 있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- 소규모 노후 건물의 경우 화장실에 대한 남녀분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,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서도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자치구청장과 협력하고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